

의안번호	제 235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0월 일 (제304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10월 11일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년 10월 11일

발 의 자 : 황규철 · 김봉희 · 정 현 · 김종필 ·
김희수 · 박문희 · 윤성옥 의원(7명)

의안 번호	235
----------	-----

1. 제안 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개정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안 제1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5. 예산조치 : 3억4천7백만원(도비)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8조제6항 중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를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기업지원을 담당하는</u> 자로 한다.</p> <p>⑦ (생략)</p>	<p>⑥ ----- ----- ----- <u>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u>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